

## 공유물분할협약서 (A-2)



갑  
제  
  
호  
증  
1

사건번호 : 2022며138387    공유물분할

원    고 : 송동일 외1

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지역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8 서정실	피고8 서정실 토지 면적 760㎡을 서정실 단독용으로 A-2 지역 (A-2a, 갑제8호증 표시 위치)에 710㎡를 단독으로 분할등기하고 사도용으로 50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서정실    ㉠
피고2 고봉주	피고2 고봉주 토지 면적 331㎡은 고봉주 단독용으로 A-2 지역 (A-2b)에 310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 사도용으로 21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고봉주    ㉠
원고2 오충수	원고2 오충수 토지 면적 555㎡은 오충수 단독용으로 A-2 지역 (A-2c, 갑제5호증2 표시 위치)에 519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 사도용으로 36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오충수 
원고1 송동일	원고1 송동일 토지 면적 278㎡은 송동일 단독용으로 A-2 지역 (A-2d, 갑제5호증2 표시 위치)에 260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 사도용으로 18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송동일 
공동 합의 내용	<p>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</p> <p>2) A-1 및 A-2 지역은 국도측 공유 도로 이용하므로, 현재 개설된 도로 개설 폭 기준으로,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하며, 나머지 93.4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</p> <p>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은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약간의 변동은 인정한다.</p> <p>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</p> <p>5) 분할 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</p> <p>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분할 공유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</p> <p>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</p> <p>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</p> <p>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</p>	

# 공유물분할협약서

(B-2)

사건번호 : 2022며138387    공유물분할

원    고 : 송동일 외1

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갑  
제  
  
호  
증  
2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4 김애란	피고4 김애란 토지 면적 433㎡를 김애란 단독용으로 B-2 지역 (B-2a)에 347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86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김애란    ①
피고12 임종현	피고12 임종현 토지 면적 760㎡를 임종현 단독용으로 B-2 지역 ( B-2b )에 608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5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임종현    ①
피고7 박혜영	피고7 박혜영 토지 면적 724㎡를 박혜영 단독용으로 B-2 지역 (B-2c)에 580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44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박혜영    ①
공동 협의 내용	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) 공유자는 자기 토지 면적의 20%를 공유자 도로(도로폭: 4m)용으로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80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 단, A-1 및 A-2 국도측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한다. 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 5) 분할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 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분할 공유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 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분할한다. 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# 공유물분할협약서

(C-1)

갑  
제  
  
호  
증  
3

사건번호 : 2022며138387    공유물분할

원    고 : 송동일 외1

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6 황종수	<p>피고16 황종수 토지 면적 767㎡를 황종수 단독용으로 C-1 지역에 614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53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</p>	황종수    ㉠
공동 합의 내용	<p>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</p> <p>2) 공유자는 자기 토지 면적의 20%를 공유자 도로(도로폭: 4m)용으로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80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 단, A-1 및 A-2 국도측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한다.</p> <p>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</p> <p>5) 분할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</p> <p>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분할 공유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</p> <p>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</p> <p>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분할한다.</p> <p>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</p>	

## 공유물분할협약서 (C-2)

사건번호 : 2022며138387    공유물분할

원    고 : 송동일 외1

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갑  
제  
  
호  
증  
4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3 최종인	피고13 최종인 토지 면적 562㎡를 최종인 단독용으로 C-2 지역 (C-2a)에 450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1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최종인    ㉠
피고15 황용준	피고15 황용준 토지 면적 661㎡를 황용준 단독용으로 C-2 지역 (C-2b)에 529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3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황용준    ㉠
공동 합의 내용	<p>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</p> <p>2) 공유자는 자기 토지 면적의 20%를 공유자 도로(도로폭: 4m)용으로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80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 단, A-1 및 A-2 국도측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한다.</p> <p>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</p> <p>5) 분할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</p> <p>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분할 공유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</p> <p>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</p> <p>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분할한다.</p> <p>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</p>	

## 공유물분할협약서 (C-3)

사건번호 : 2022머138387    공유물분할  
원    고 : 송동일 외1  
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갑  
제  
  
호  
증  
5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4 허경숙	피고14 허경숙 토지 면적 661㎡를 허경숙 단독용으로 C-3 지역 (C-3a)에 529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3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허경숙    ①
피고3 김수정	피고3 김수정 토지 면적 463㎡를 김수정 단독용으로 C-3 지역 (C-3b)에 371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9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김수정    ①
공동 합의 내용	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) 공유자는 자기 토지 면적의 20%를 공유자 도로(도로폭: 4m)용으로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80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 단, A-1 및 A-2 국도측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한다. 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 5) 분할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 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분할 공유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 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분할한다. 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# 공유물분할협약서

## (A-1)

사건번호 : 2022며138387    공유물분할  
 원    고 : 송동일 외1  
 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갑  
제  
  
호  
증  
6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6 남진현	피고6 남진현 토지 면적 810㎡를 남진현 단독용으로 A-1 지역 (A-1a)에 303㎡ 및 C-3 지역 ( C-3c )에 389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18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남진현    ㉠
피고11 임동현	피고11 임동현 토지 면적 149㎡를 임동현 단독용으로 A-1 지역 (A-1b)에 57㎡ 및 C-3 지역 ( C-3f )에 72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20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임동현    ㉠
피고1 강용호	피고1 강용호 토지 면적 539㎡를 강용호 단독용으로 A-1 지역 (A-1d)에 201㎡ 및 C-3 지역 ( C-3d )에 260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78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강용호    ㉠
피고9 안정희	피고9 안정희 토지 면적 661㎡를 안정희 단독용으로 A-1 지역 (A-1d)에 247㎡ 및 C-3 지역 ( C-3e )에 318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96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안정희    ㉠
공동 합의 내용	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) 공유자는 자기 토지 면적의 20%를 공유자 도로(도로폭: 4m)용으로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80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 단, A-1 및 A-2 국도측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한다. 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 5) 분할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 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분할 공유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 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분할한다. 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## 공유물분할협약서 (B-1)

사건번호 : 2022머138387    공유물분할  
원    고 : 송동일 외1  
피    고 : 강용호 외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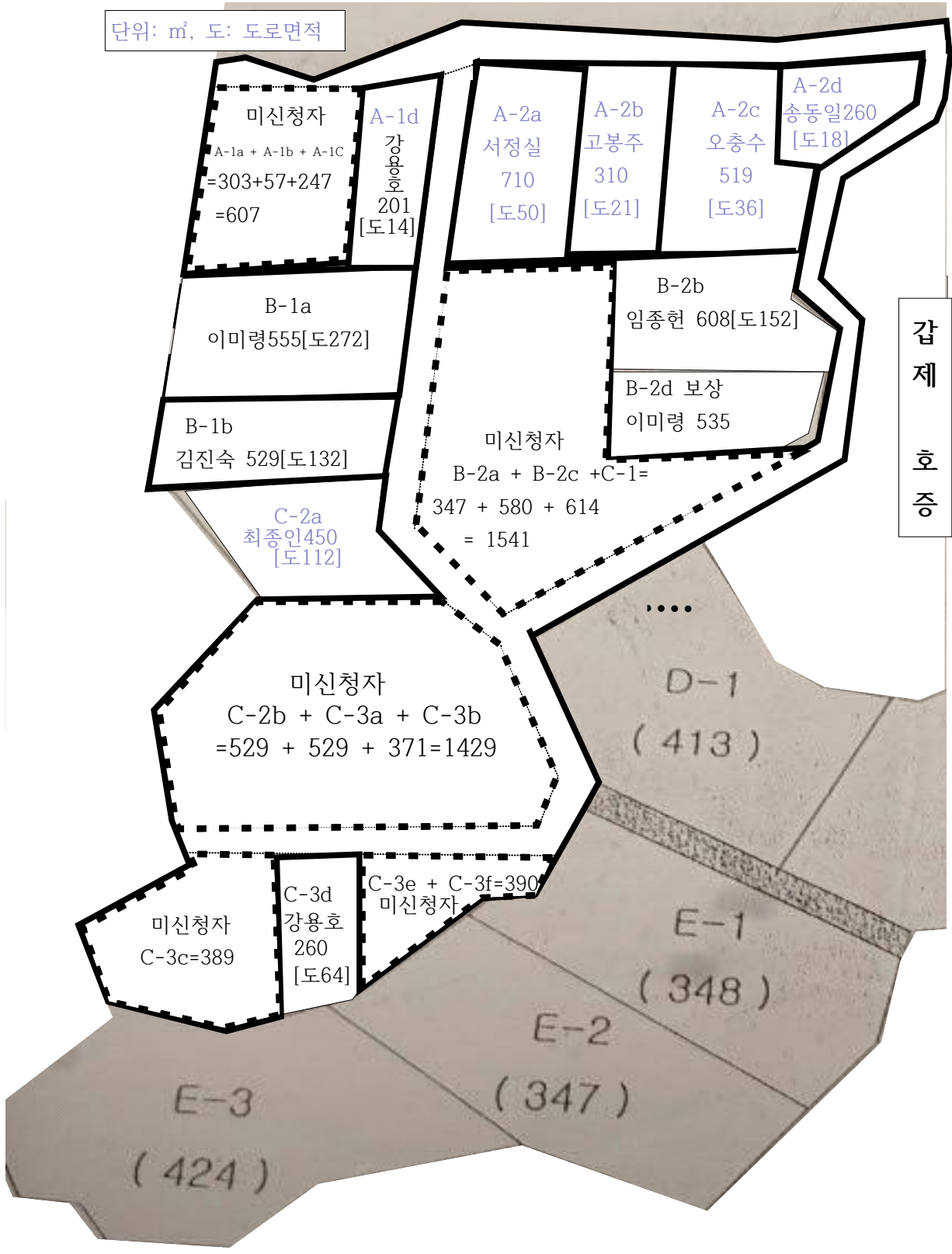
갑  
제  
  
호  
증  
7

위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0 이미령	피고10 이미령 토지 면적 1362㎡를 이미령 단독용으로 B-1 지역 ( B-1a )에 555㎡ 및 B-2 지역 ( B-2d )에 535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27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이미령    ①
피고5 김진숙	피고5 김진숙 토지 면적 661㎡를 김진숙 단독용으로 B-1 및 C-2 지역( B-1b )에 529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사도용으로 132㎡를 공유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한다.	김진숙    ①
공동 합의 내용	<p>1)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</p> <p>2) 공유자는 자기 토지 면적의 20%를 공유자 도로(도로폭: 4m)용으로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80%를 단독 명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. 단, A-1 및 A-2 국도측 공유 도로 면적은 6.6% 한다.</p> <p>3) A-1 및 A-2 북측 경계선은 실제 도로공사 된 경계선으로 하되,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돌담 등 참고하여 측량기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4) 토지 분할 측량시 10% 이하 변동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, 10%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하에 처리한다.</p> <p>5) 분할측량시 남는 면적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 분할측량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.</p> <p>6) 제주 출장 항공료 및 숙박비 등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.</p> <p>7)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</p> <p>8)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(공유 도로에 포함됨) 희망자 위주로 분할한다.</p> <p>9)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</p>	

# 토지 가분할도(원안)

단위: m<sup>2</sup>, 도: 도로면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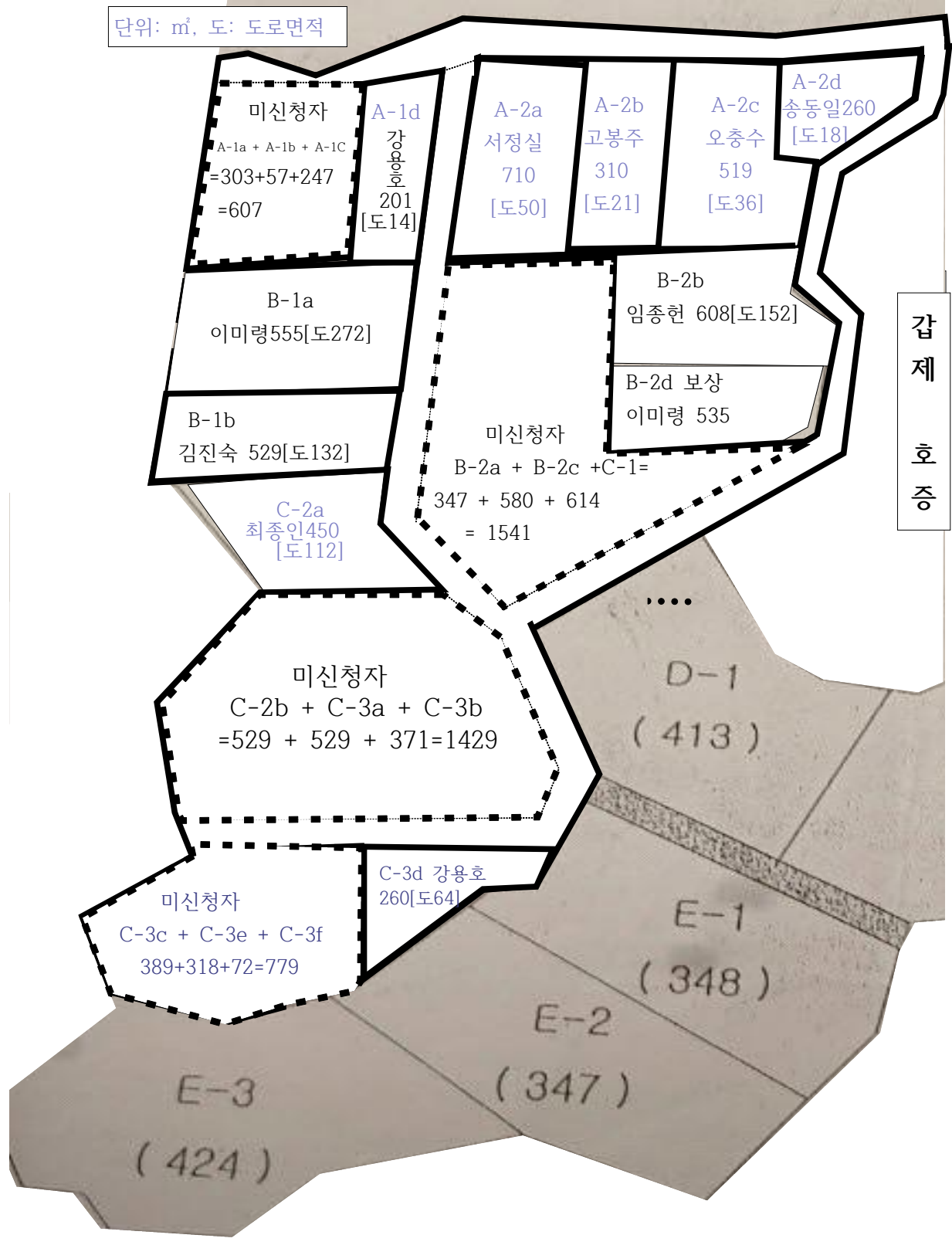
갑제 호증



# 토지 가분할도(측량안)

[C-3e 및 C-3f 미신청으로 C-3d 이동]

단위: m<sup>2</sup>, 도: 도로면적



갑 제 호 증